

제2026-69호 2026년 8월 28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도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세계가 찾는 매력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3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4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주행차량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사업)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6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7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모도 녹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5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공 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13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화정면 제2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41호 |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격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45호 | 전기사업 양수양도 공고 - 실근1호 태양광발전소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46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재공고(둔덕동 산96-1번지 외 39필지)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49호 | 2026년도 쌍봉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54호 |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55호 |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재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56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개도저수지 및 관정 사용허가)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61호 |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 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67호 |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69호 |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본부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73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75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77호 |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명단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78호 |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79호 |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82호 |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읍·면·동

- | | | |
|--------------|-----------|--|
| ○ 여수시 화정면 공고 | 제2026-19호 | 2026년 화정면 해수욕장 수상안전 계도요원 서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여수시 쌍봉동 공고 | 제2026-41호 | 2026년 쌍봉동 농지 전수조사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 여수시 대교동 공고 | 제2026-18호 | 2026년 대교동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결과 및 채용 등록계획 공고 |

입법예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50호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

회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2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320, 공원: 227)

나. 명 칭: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6,713㎡

나. 규 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경관녹지 320	3,104	3,104	
어린이공원 227	3,609	3,60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김민곤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4. 7.11. ~ 2027. 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경관녹지)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총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유지분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7,888.0	3,104.0	-	-	-	-	-	-	-
1	학용동	산63-3	임야	99.0	99.0	-	-	김감두	시전리 333	-	-	기 정
1	학용동	산63-3	임야	99.0	99.0	김미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28, 301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785,400	변 경
						김은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6길 41, 101호 (아현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5,700,384	
						김재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에이동 1001호 (중동, 이안더클래식)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785,400	
						김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119동 1203호 (청라동, 청라자이)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785,400	
						김하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55, 401호 (원종동, 르네상스타워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785,400	
						김효순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29 (학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40,317,200	
						김효심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 103동 1414호 (문수동, 주공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37,185,120	
						박개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2길 5-70 (웅천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732,500	
						박경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107동 506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박분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06동 1804호 (웅천동, 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박은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99, 212동 103호 (웅천동, 포레나여수웅천더테라스 2단지)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박은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6, 102동 1901호 (죽림호반베르디움)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박재숙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103동 502호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총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유지분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박주남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26, 101동 1101호 (문수동, 피오레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박주태	전라남도 여수시 대치2길 45-1(여서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561,000	
						서강근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16, 107동 1406호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2,454,375	
						서미자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7길 8-12, 204호 (선원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2,454,375	
						서원근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4길 12-16 (웅천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2,454,375	
						서채근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16, 107동 1406호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2,454,375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72,476,696	
						정재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935-1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재곤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209동 1503호(죽림휴먼시아)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재남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2길 5-70, 301호 (웅천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재완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의향길 38, 에이동 303호 (휴먼홈스텔)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재택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동강덕촌길 64-218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재필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58, 104동 1402호 (학동, 부영아파트)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정희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1길 54-1 (덕암동)	-	-	-	공유자 지분 292,383,000 분의 1,155,000	
2	학용동	산67-3	임야	1,785.0	822.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 경 없 음
3	학용동	산68-4	임야	397.0	200.0	신기주공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	-	-	-	변 경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총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유지분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지역주택 조합	188, 2층(신기동)					없음
4	학용동	49-2	답	288.0	103.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5	학용동	50-2	전	1,086.0	124.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6	학용동	53-1	전	1,122.0	231.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7	학용동	98-1	전	1,513.0	677.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8	학용동	101-3	전	55.0	1.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9	학용동	102-2	전	1,050.0	354.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10	학용동	108-2	전	458.0	458.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11	학용동	924-20	구거	35.0	35.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	변경 없음

○ 토지조서(어린이공원) (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2필지		35,546.8	3,609						
1	신기동	3	대지	32,824.8	3,383.0	신기주공 지역주택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580/580)
2	신기동	175	임	2,722	226	신기주공 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6. 8. 2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21) 사업
 - 나. 명 칭: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L=268m, B=21.10~24.3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7. 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섬박람현대책과(☎061-659-2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읍	리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돌산	우두	998	제	4,289.0	181.0	건 설 부					
2	돌산	우두	998-1	제	5,192.0	108.0	건 설 부					
3	돌산	우두	1181	원	168,480.8	1,048.0	여 수 시					
4	돌산	우두	1182	도	3,915.8	586.0	여 수 시					
5	돌산	우두	1183	잡	3,615.6	142.0	여 수 시					
6	돌산	우두	1193	도	124.0	22.0	여 수 시					
7	돌산	우두	1192	도	6,789.1	16.0	여 수 시					
합계					192,406.3	2,103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 착수 전.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개별법령 등에 따라 적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가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 때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4. 관련 이해관계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건과 민원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상 및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면적을 확대·축소할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반드시, 사업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건 설 과	○ 무상귀속 대상	○ 무상귀속 행정절차 이행	반영
교 통 과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시선유도봉) 설치 관련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설치 ○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여수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	○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 노면표시 여수경찰서과 협의하여 시행	반영
기후생태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2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신고	○ 관련법에 따른 신고 후 시행	반영
노안장애과	○ 보도 개설 및 보행 환경 · 휠체어·유모차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 유효폭 최소 2.0m 이상 확보 및 평탄 포장 적용 · 보차도 경계석 시공 및 횡단보도 접촉 구간의 턱을 2cm 이하(바닥면 일치)로 단차제거 제거 ○ 가로시설물대 설정 및 장애물 차단 · 가로등, 표지판, 소화전(2개소) 등은 차도 측 '가로시설물대'에 몰아 설치하여 보행 동선 간섭 차단 · 우수받이는 휠체어 바퀴나 지팡이가 빠지지 않게 시공 ○ 시각장애인 안전 및 안내 · 시각장애인 안전 및 안내점자블록 연계: 횡단보도 진입부 및 주행사장 주출입구 연결 지점에 선형·점형 점자블록 연속 설치 · 야간 개장 대비 보도 조도 확보 및 명도 대비를 통한 시인성 강화 ○ 공사중 보행안전 · 공사 중 교통약자용 임시 보행로, 안전 펜스, 야간 발광 표지판 설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반영

관계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로시설 관 리 과	○ 「도로법」,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준수 ○ 도로 우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것 ○ 도로 비탈면 정비 실시하여 도로 낙석 등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	○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 우수처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반영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 - 해당 부지는 지정문화유산이 위치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 해당 부지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시행 가능	○ 해당없음	-
상수도과	○ 돌산읍 우두리 1182번지 일원 일부 구간 상수도 관망확인결과 (HI-VP)150mm 관이 매설되어 있어 추후 협의	○ 공사 추진시 사전협의 실시	반영
스마트정보과	○ 공공용지에 상하수도 시설이 신설, 이설될 경우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료 구축을 위한 상하수도 GIS DB 구축 용역비를 공사비에 반영 조치 ○ 공공측량 작업 규정 제179조에 의거 공사 완료전 상하수도 노출 상태에서 시설물 조사 탐사 실시 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관련 자료 제출 ○ 굴착공사 시행 시 7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해당없음	-
안전총괄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 5,000㎡ 미만에 해당되어 재해 영향평가 심의 제외 대상	○ 해당없음	-

관계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중부민원출 장 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계획사업으로 실시 계획 수립·인가 이후 지적확정측량 실시	○ 인가 후 확정측량 실시	반영
하수도과	○ 「하수도 설계기준」 등 관계법령 및 지침준수 ○ 신규설치 추락방지시설 의무설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반영
허 가 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별표 9]에 해당하는 기계 장비 5일 이상 사용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관련법에 따라 설치	반영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6. 8. 27.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및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유진엔지니어링(주) 김승일
 - 나. 주 소: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및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 나. 사업의 개요: 부지조성 2,54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412-1번지 외 5필지
 - 나. 면 적: 2,541㎡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6. 3.25.~2026.12.31.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붙임
8.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신청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2,541	2,541			
1	중흥동	1412-1	전	149	149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2	중흥동	1413	전	519	519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3	중흥동	1414-3	전	800	800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4	중흥동	1414-6	전	417	417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5	중흥동	1416-1	전	417	417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6	중흥동	1418-2	전	239	239	유진엔지니어링(주)	여수시 여수산단로 273-18(월하동)	

실시계획(변경)승인조건

1. 당초 승인조건 및 개별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라 제출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참조)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전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유진엔지니어링(주)]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국 철 공 가 도 단	▪ 「여수시 중흥동 1412-1번지 일원,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과 관련하여 앞서 배수계획 등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금번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 없음	
한국산업 단지공단	▪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를 양도받기 전에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미리 체결하여야 하나, 해당 부지에 입주계약이 이행된 바 없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른 시일 내에 입주계약을 신청 하겠음.	반영
문 화 유 산 과	▪ 해당 부지는 지정문화유산이 위치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해당 부지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시행 가능 ▪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중 문화유산 으로 의심되는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될 시, 같은 법률 제5조, 제17조에 따라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신고 바람	▪ 해당사항 없음	

관계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민 원 지 적 과	■ 여수시 중흥동 1412-1번지 일원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및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공장용지 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준공검사 전 지적확정 측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적확정측량 후 토지개발 사업 완료 등의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지역 내 모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치하여야 하고, 소유권 등기 이외의 다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함을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확정 측량 대상으로 준공 전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은 일치	반영
안 전 총 괄 과	■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 등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 등)에 따라 1항 1목에서 8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및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공장용지 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은 면적 2,541㎡로 당초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며, 금회 배수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또한 면적 변경이 없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님을 회신 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묘도동 19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122, 소로 1-354)사업
 - 나. 명 칭 : 묘도 녹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Γ 당초: 64,117 m^2
 $\sqsubset$ 변경: 64,673 m^2
 - 나. 규 모 : L=965m, B=12m, L=480m, 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Γ 당초: 2017. 1.19. ~ 2026. 2.28.
 $\sqsubset$ 변경: 2017. 1.19. ~ 203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계도서: 여수시 공영개발과,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2) 및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여수시묘도동	1911-12	전	26	26	26	국토교통부	국유지	1		변경 없음
2	여수시묘도동	1911-9	전	629	629	629	국토교통부	국유지	2		변경 없음
3	여수시묘도동	1911-13	전	2,562	2,550	2,550	국토교통부	국유지	3		변경 없음
4	여수시묘도동	1911-11	전	307	305	305	국토교통부	국유지	4		변경 없음
5	여수시묘도동	1914-1	답	974	974.0	974.0	국토교통부	국유지	5		변경 없음
6	여수시묘도동	산170-4	임야	495	495	495	국토교통부	국유지	6		변경 없음
7	여수시묘도동	1911-15	전	611	611	611	국토교통부	국유지	7		변경 없음
8	여수시묘도동	산170-3	임야	298	298	298	국토교통부	국유지	8		변경 없음
9	여수시묘도동	1912-1	답	103	103	103	국토교통부	국유지	9		변경 없음
10	여수시묘도동	1913-1	답	270	270	270	국토교통부	국유지	10		변경 없음
11	여수시묘도동	2000	도로	66	57	57	기획재정부	국유지	11		변경 없음
12	여수시묘도동	1905-1	답	430	430	430	국토교통부	국유지	12		변경 없음
13	여수시묘도동	1996-1	구거	222	222	222	국토교통부	국유지	13		변경 없음
14	여수시묘도동	1904-1	전	753	753	753	국토교통부	국유지	14		변경 없음
15	여수시묘도동	1915-2	전	1,922	1,922	1,922	국토교통부	국유지	15		변경 없음
16	여수시묘도동	1840-5	임야	2,637	2,637	2,637	국토교통부	국유지	16		변경 없음
17	여수시묘도동	1839-3	답	46	46	46	국토교통부	국유지	17		변경 없음
18	여수시묘도동	산180-7	임야	344	344	344	국토교통부	국유지	18		변경 없음
19	여수시묘도동	산180-8	임야	358	358	358	국토교통부	국유지	19		변경 없음
20	여수시묘도동	산180-9	임야	1,943	1,938	1,938	국토교통부	국유지	20		변경 없음
21	여수시묘도동	1839-4	전	1,266	1,266	1,266	국토교통부	국유지	21		변경 없음
22	여수시묘도동	1836-9	임야	825	818	818	국토교통부	국유지	22		변경 없음
23	여수시묘도동	1840-4	답	992	976	976	국토교통부	국유지	23		변경 없음
24	여수시묘도동	1996-3	구거	50	50	50	국토교통부	국유지	24		변경 없음
25	여수시묘도동	1840-8	임야	48	48	48	국토교통부	국유지	25		변경 없음
26	여수시묘도동	1840-7	임야	603	603	603	국토교통부	국유지	26		변경 없음
27	여수시묘도동	1840-1	임야	576	4	4	국토교통부 외 7인	국유지	부산북구만덕대로 115번길5,1동502 호 부산북구금곡대로 268,103-1302 부산서구해돋이로 173번길14 부산동래구연안로 71,102-1403 양산시대운로338, 205-1304 부산사하구감천로 9번길11,301호 부산사하구대티로 1번길22,105-201	김양순 서정은 이운순 노경희 박동주 이은주 김명숙	변경 없음
28	여수시묘도동	산185-10	임야	44	44	44	국토교통부	국유지	28		변경 없음
29	여수시묘도동	산185	임야	997	1	1	서울 강북구 번동 242 주공아파트 110-1006	황경선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0	여수시 묘도동	1836-11	임야	438	2	2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03 무등파크맨션 아파트 102-1405	최홍엽 외 3인	하남시덕풍동695 벽산블루밍A106- 1704 서울마포구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3-7블럭상암 월드컵파크7단지7 03-403 순천시조곡동512 정원네스빌A101- 305	김지용 김수영 김선영	변경 없음
31	여수시 묘도동	1836-10	임야	352	348.0	348.0	국토교통부	국유지	29		변경 없음
32	여수시 묘도동	1836-5	임야	1,505	5	5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03 무등산파크맨 션아파트 102-1405	최홍엽 외 3인	하남시덕풍동695 벽산블루밍A106- 1704 서울마포구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3-7블럭상암 월드컵파크7단지7 03-403 순천시조곡동512 정원네스빌A101- 305	김지용 김수영 김선영	변경 없음
33	여수시 묘도동	1836-12	임야	3,629	3,612	3,61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34	여수시 묘도동	1836	답	1,340	8	8	삼일읍 묘도리 1345	설정수			변경 없음
35	여수시 묘도동	1836-8	답	366	366	36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36	여수시 묘도동	1837	전	569	516	51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37	여수시 묘도동	산187-1	임야	83	83	8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38	여수시 묘도동	산187	임야	13,801	6	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8-23	이석제 외 8인	서울영등포구문래 동3가76-1국화A1 동303호 서울관악구신림동 532-19 서울관악구남부순 화로143가길4 전주시덕진구무삼 지5길11-4 전주시덕진구무삼 지5길11-4 전주시덕진구무삼 지5길11-4 서울영등포구국회 대로37길22,103-9 02 서울영등포구국회 대로37길22,103-9 02	천정자 유옥자 최춘순 유서원 이상철 이상백 최유나 최유진	변경 없음
39	여수시 묘도동	산188-1	임야	3,236	3,005	3,00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40	여수시 묘도동	산188-2	임야	860	9	9	여수시 묘도동 1035	백동심			변경 없음
41	여수시 묘도동	1836-13	임야	1,001	17	17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03 무등파크맨션 아파트 102-1405	최홍엽 외 3인	하남시덕풍동695 벽산블루밍A106- 1704 서울마포구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3-7블럭상암 월드컵파크7단지7 03-403 순천시조곡동512 정원네스빌A101- 305	김지용 김수영 김선영	변경 없음
42	여수시 묘도동	1838	전	182	2	2	여수시 묘도동 1387	김용선			변경 없음
43	여수시 묘도동	1838-1	전	354	349	34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44	여수시 묘도동	산192-3	임야	907	170	-	여수시 묘도동 1377-6	김정곤			기정
	여수시 묘도동	산192-6	임야	175	-	17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45	여수시 묘도동	산192-4	임야	1,188	1,188	-	여수시 묘도동 1451-3	김승곤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여수시 묘도동	산192-4	임야	1,188	-	1,18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46	여수시 묘도동	1833-2	전	2,672	1,042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68-1 청솔아파트 102-1402	이경주			기정
	여수시 묘도동	1833-3	전	1,049	-	1,04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47	여수시 묘도동	산192-2	임야	496	94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68-1 청솔아파트 102-1402	이경주			기정
	여수시 묘도동	산192-5	임야	171	-	17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48	여수시 묘도동	산191-1	임야	6,149	2,871	-	광양시 금호동 624-13 사랑아파트 9-604	정병옥 외 2인	광양시금호동825 초원A11-402 광양시금호동624- 1백합A30-203	서정아 서정옥	기정
	여수시 묘도동	산191-3	임야	3,143	-	3,14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49	여수시 묘도동	1509-1	전	1,326	6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55-2 첨단 대우아파트 108동 201호	심재용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09-2	전	628	-	62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0	여수시 묘도동	1510-1	임야	7,932	1,878	-	경산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80	허진영 외 13인	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동102-1신성 미소지움A102-80 3 경산시신교동70-3 은하맨션101-103 대구달서구파호동 89성서삼성명가타 운216-1901 진주시금산명장사 리965-1금사아이 파크106-1302 부산서구서대신동 3개589-5 부산사상구덕포동 179-2 부산수영구광안동 166-1성원골든빌 라302 김해시장유면관동 리452-7팔판마을4 단지푸르지오406- 103 부산해운대구좌동 1394두산동국A11 0-1506 서울강서구화곡동 102-20금강파크빌 202 김해시삼계동1439 -5화정마을아이파 크가야409-1303 부산사상구덕포동 49덕포신익타운10 2-103 부산부산진구부전 로152번길31-11	이승훈 성태수 권선자 윤숙명 박미영 강돌복 이상균 박영 전혜련 신선혜 배소임 임기수 문병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0-4	임야	1,875	-	1,87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1	여수시 묘도동	1510	전	1,861	788	788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4길 65 101동 805호(마동, 우림필유아파 트)	한윤숙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996	심재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0	전	794	-	79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2	여수시 묘도동	1845-2	전	3,769	766	-	부산중구부평 동2가 20-14	이남구			기정
	여수시 묘도동	1845-6	전	756	-	75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3	여수시 묘도동	1855	전	2,942	19	-	여천시 묘도동 111	남양방 씨사계 파묘도 도문화			기정
	여수시 묘도동	1855-1	전	20	-	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4	여수시 묘도동	1508	답	311	225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5길 3(묘도동)	방순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08-1	답	227	-	22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5	여수시 묘도동	1509	전	817	817	-	여수시 묘도동 1371	심현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09	전	817	-	81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6	여수시 묘도동	1511	답	1,974	525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49-17	김유경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1-1	답	526	-	52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7	여수시 묘도동	1517	답	952	952	-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79-26	김인수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7	답	952	-	95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8	여수시 묘도동	1516-2	답	1,220	6	-	여수시 묘도동 842-4	김해김 씨삼현 파묘도 도문화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6-5	답	6	-	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59	여수시 묘도동	1516-3	답	1,795	1,795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426 극동정림아파 트 -1419	박정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6-3	답	1,795	-	1,79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0	여수시 묘도동	1518	전	1,511	1,167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269-1 대성빌라 101-301	심재귀 외 1인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8-1	전	1,164	-	1,16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1	여수시 묘도동	1519	답	1,425	593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4길 8(묘도동)	정춘택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9-1	답	594	-	594	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2	여수시 묘도동	1520	답	1,812	236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4길 8(묘도동)	정춘택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0-1	답	234	-	234	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63	여수시 묘도동	1517-1	답	1,322	1,063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9-25 사직동리첼스 빌 비-601	김귀조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401	이맹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7-2	답	1,078	-	1,07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4	여수시 묘도동	1516-1	답	2,185	571	-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439-1	박종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16-4	답	550	-	55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5	여수시 묘도동	1533	전	544	544	-	부산북구 만덕동 254-17 대성빌라 비-201	곽양옥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3	전	544	-	54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6	여수시 묘도동	1534-2	전	853	491	-	묘도리 1360	심삼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4-2	전	503	-	50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7	여수시 묘도동	1534-1	전	1,157	221	-	창원시동읍월 잠리 555-3	안경숙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4-4	전	218	-	21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68	여수시 묘도동	1522	전	2,545	113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79-14(묘도동)	전정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2-1	전	113	-	113	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69	여수시 묘도동	1524	전	945	399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909-6	김춘식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4-1	전	945	-	39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0	여수시 묘도동	1533-1	전	511	138	-	여수시 묘도동 1368	박금병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3-2	전	136	-	13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1	여수시 묘도동	1532	전	668	28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2마길 56 104동 1201호 (자양동, 로얄동아아파 트)	조정숙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2-1	전	287	-	28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2	여수시 묘도동	1531-1	전	1,222	1,031	-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740 주공아파트 207-505	김양곤 외 1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5-6 일상인포A 썬-1506	김성곤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여수시 묘도동	1531-6	전	1,054	-	1,05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3	여수시 묘도동	1446-4	전	297	16	16	여수시 묘도동 1380-7	안덕엽			변경 없음
74	여수시 묘도동	1446-3	도로	61	6	6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75	여수시 묘도동	1446-2	도로	46	5	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85(묘도동)	강채인			변경 없음
76	여수시 묘도동	1445-7	도로	25	15	-	여수시 중흥동 1226-6	심경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10	도로	15	-	1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7	여수시 묘도동	1445-9	대지	451	451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95(묘도동)	심경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9	대지	451	-	45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8	여수시 묘도동	1445-3	도로	20	20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3	도로	20	-	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79	여수시 묘도동	1445-4	도로	114	114	-	여수시 묘도동 1361	심재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4	도로	114	-	11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0	여수시 묘도동	1445-5	도로	99	99	-	여수시 묘도동 1361	심재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5	도로	99	-	9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1	여수시 묘도동	1445-1	전	2,010	681	-	삼일면 묘도리 1361	심재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8	전	685	-	68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2	여수시 묘도동	1445-2	도로	7	7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45-2	도로	7	-	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3	여수시 묘도동	1436-4	도로	4	4	-	여수시 묘도동 1353	최본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6-4	도로	4	-	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4	여수시 묘도동	1436-2	도로	139	139	-	여수시 묘도동 1383-2	심문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6-2	도로	139	-	13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5	여수시 묘도동	1436-1	전	2,263	1,903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9-25 사직동 리첸스빌 비-601	김귀조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401	이맹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6-6	전	1,914	-	1,91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6	여수시 묘도동	1436-5	도로	220	220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9-25 사직동리첸스 빌 비-601	김귀조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401	이맹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6-5	도로	220	-	2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7	여수시 묘도동	1436-3	도로	49	49	-	여수시 묘도동 1353	최본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6-3	도로	49	-	4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8	여수시 묘도동	1383-3	도로	10	10	-	여수시 묘도동 1383	심상길			기정
	여수시 묘도동	1383-3	도로	10	-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89	여수시 묘도동	1403-3	도로	13	13	-	여수시 묘도동 1362	심상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3-3	도로	13	-	1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0	여수시 묘도동	1403-4	도로	36	36	36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91	여수시 묘도동	1403-5	도로	98	98	-	여수시 묘도동 1362	심광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3-5	도로	98	-	9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2	여수시 묘도동	1403-2	도로	33	33	-	여수시 묘도동 1362	심상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3-2	도로	33	-	3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3	여수시 묘도동	1404-2	도로	122	122	-	여수시 묘도동 1342	정성주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4-2	도로	122	-	12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4	여수시 묘도동	1404-4	도로	11	11	-	여수시 묘도동 1383-1	박등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4-4	도로	11	-	1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5	여수시 묘도동	1404-5	도로	163	163	-	여수시 묘도동 1383-1	박등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4-5	도로	163	-	16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6	여수시 묘도동	1404-3	도로	90	90	-	여수시 묘도동 1383-1	박등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4-3	도로	90	-	9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7	여수시 묘도동	1406-4	도로	11	11	11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98	여수시 묘도동	1406-2	도로	96	96	-	여수시묘도동	김육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6-2	도로	96	-	9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99	여수시 묘도동	1406-5	도로	117	117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9-25 사직동 리첸스빌 비-601	김귀조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401	이맹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6-5	도로	117	-	11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00	여수시 묘도동	1406-1	전	1,392	147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9-25 사직동 리첸스빌 비-601	김귀조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401	이맹순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6-6	전	146	-	14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01	여수시 묘도동	1406-3	도로	24	24	-	여수시묘도동	김육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6-3	도로	24	-	2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02	여수시 묘도동	1435	전	625	53	53	여수시 묘도동 1353	심응섭			변경 없음
103	여수시 묘도동	1434-1	전	499	139	139	여수시 묘도동 1353	심응섭			변경 없음
104	여수시 묘도동	1434-3	도로	17	17	17	여수시 묘도동 1337	정상규			변경 없음
105	여수시 묘도동	1434-5	도로	7	7	7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06	여수시 묘도동	1434-4	도로	4	4	-	여수시묘도동	설몽돌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4-4	도로	4	-	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07	여수시 묘도동	1434	전	1,262	128	-	여수시 묘도동 1353	심 응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4-6	전	324	-	324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08	여수시 묘도동	1434-2	도로	20	20	-	여수시묘도동	설몽돌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34-2	도로	20	-	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09	여수시 묘도동	1421-2	도로	13	13	-	여수시 묘도동 1004	정복례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1-2	도로	13	-	1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0	여수시 묘도동	1421-1	전	995	454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76(묘도동)	조정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1-3	전	453	-	45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1	여수시 묘도동	1420-2	도로	13	13	-	여수시 묘도동 1346	심청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0-2	도로	13	-	1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2	여수시 묘도동	1420-3	도로	9	9	-	여수시묘도동 1346	신길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0-3	도로	9	-	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3	여수시 묘도동	1422	전	1,379	130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5길 20(묘도동)	이현수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2-1	전	129	-	12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4	여수시 묘도동	1420-4	도로	8	8	-	여수시 묘도동 1346	신길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0-4	도로	8	-	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5	여수시 묘도동	1984	구거	1,299	28	2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116	여수시 묘도동	1420-1	전	350	350	-	여수시 묘도동 1346	심길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0-1	전	350	-	35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7	여수시 묘도동	1423	전	592	220	-	여수시 묘도동 1390	심현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3-1	전	223	-	22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8	여수시 묘도동	1424	답	2,425	1,494	-	여수시 묘도동 1284	김순엽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4-2	답	1,472	-	1,47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19	여수시 묘도동	1526-1	전	1,058	1,058	-	여수시 묘도동 1373	김응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6-1	전	1,058	-	1,05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0	여수시 묘도동	1407-1	전	1,501	415	-	여수시 묘도동 997	김정숙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7-1	전	412	-	41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1	여수시 묘도동	1407-4	도로	111	111	-	여수시 묘도동 1335	김길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7-4	도로	111	-	11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2	여수시 묘도동	1407-2	도로	50	50	-	여수시 묘도동 1373	김용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07-2	도로	50	-	5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3	여수시 묘도동	1419-1	전	1,427	29	-	여수시 묘도동 1360	청송심 씨안효 공파묘 도서편 소문중 외 1인	여수시 묘도동 1331	김외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19-8	전	29	-	2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4	여수시 묘도동	1419-3	도로	40	40	-	여수시 묘도동 1331	김외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19-3	도로	40	-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5	여수시 묘도동	1419-5	도로	120	120	120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26	여수시 묘도동	1419-7	도로	96	96	-	여수시 묘도동 1360	청송심 씨안효 공파묘 도서편 소문중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19-7	도로	96	-	9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7	여수시 묘도동	1419-2	도로	40	40	-	여수시 묘도동 1361	심상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19-2	도로	40	-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28	여수시 묘도동	1419-4	도로	18	18	18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29	여수시 묘도동	1527-4	답	23	23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7-4	답	23	-	2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0	여수시 묘도동	1569-2	도로	7	7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9-2	도로	7	-	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1	여수시 묘도동	1569-3	도로	54	54	54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32	여수시 묘도동	1569-4	도로	81	81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9-4	도로	81	-	8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3	여수시 묘도동	1424-1	도로	8	8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4길 11(묘도동)	김순엽			기정
	여수시 묘도동	1424-1	도로	8	-	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4	여수시 묘도동	1527-3	도로	195	195	195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35	여수시 묘도동	1527-2	도로	215	215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7-2	도로	215	-	21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6	여수시 묘도동	1527-5	도로	48	48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7-5	도로	48	-	4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7	여수시 묘도동	1527-1	답	88	88	-	여수시 묘도동 1361	청송 원백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여수시 묘도동	1527-1	답	88	-	8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8	여수시 묘도동	1567-2	도로	10	10	-	여수시 묘도동 1362	심광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7-2	도로	10	-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39	여수시 묘도동	1567-3	도로	3	3	3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40	여수시 묘도동	1567-4	도로	5	5	-	여수시 묘도동 1362	심광섭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7-4	도로	5	-	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1	여수시 묘도동	1528-5	전	1,301	1,231	-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28 대주파크빌 103-1603	황경숙 외 1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A 13-908	박은숙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8-6	전	1,221	-	1,22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2	여수시 묘도동	1528-3	도로	20	20	-	여수시 묘도동 1380-6	박우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8-3	도로	20	-	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3	여수시 묘도동	1528-2	도로	122	122	-	여수시 묘도동 1380-6	박우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8-2	도로	122	-	12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4	여수시 묘도동	1528-4	도로	3	3	-	여수시 묘도동 1380-6	박우봉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28-4	도로	3	-	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5	여수시 묘도동	1530	전	893	50	-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316 110-1203(둔 덕동, 한려아파트)	이숙희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0	전	51	-	51	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146	여수시 묘도동	1531-3	전	13	13	-	여수시 묘도동 1387	김소보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1-3	전	13	-	1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7	여수시 묘도동	1531-4	도로	30	30	30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48	여수시 묘도동	1531-5	도로	41	41	-	여수시 묘도동 1347	김용선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1-5	도로	41	-	4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49	여수시 묘도동	1531-2	도로	66	66	-	여수시 묘도동 1387	김소보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1-2	도로	66	-	6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0	여수시 묘도동	1534-3	도로	40	40	-	여수시묘도동	설당공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4-3	도로	40	-	4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1	여수시 묘도동	1535-3	도로	43	43	-	여수시 묘도동 1001	이규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5-3	도로	43	-	4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2	여수시 묘도동	1535-1	대지	471	119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0길 38-4(묘도동)	이 채원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여수시 묘도동	1535-5	대지	118	-	11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3	여수시 묘도동	1535-4	도로	61	61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0길 38-4(묘도동)	이채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5-4	도로	61	-	6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4	여수시 묘도동	1535-2	도로	3	3	-	여수시 묘도동 1001	이규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5-2	도로	3	-	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5	여수시 묘도동	1564-5	도로	10	10	-	여수시 묘도동 995	김일영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5	도로	10	-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6	여수시 묘도동	1564-4	도로	17	17	-	여수시 묘도동 995	김일영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4	도로	17	-	1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7	여수시 묘도동	1564-7	도로	90	90	90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58	여수시 묘도동	1564-8	도로	172	172	-	순천시서면선 평리1087 배들마을주공 아파트 108-1404	김상우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8	도로	172	-	17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59	여수시 묘도동	1564-3	도로	13	13	-	여수시 묘도동 995	김일영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3	도로	13	-	1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0	여수시 묘도동	1564-1	전	2,428	955	-	순천시 서면 선평리 1087 배들마을주공 아파트 108동 1404호	김상우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1	전	959	-	959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1	여수시 묘도동	1564-6	도로	84	84	84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62	여수시 묘도동	1564-2	도로	10	10	-	여수시 묘도동 995	김일영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4-2	도로	10	-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3	여수시 묘도동	1563-3	도로	10	10	-	묘도리 521	청송 귀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3-3	도로	10	-	1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4	여수시 묘도동	1563-1	대지	825	220	-	전라남도 여수시묘도동 912-4	조정자 외 1인	여수시 묘도12길 43-1	김형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3-7	대지	221	-	22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5	여수시 묘도동	1563-5	도로	42	42	42	여수시 묘도동 1390	조 정순			변경 없음
166	여수시 묘도동	1563-6	전	937	65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912-4	조정자 외 1인	여수시 묘도12길 43-1	김형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3-8	전	65	-	6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7	여수시 묘도동	1563-2	도로	3	3	-	묘도리 521	청송 귀남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3-2	도로	3	-	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8	여수시 묘도동	1536	답	1,296	155	-	여수시 묘도동 1336	김 중곤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여수시 묘도동	1536-1	답	156	-	15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69	여수시 묘도동	1979	도로	3,733	1,250	1,25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170	여수시 묘도동	1538	전	919	445	445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3길 23(묘도동)	윤상심			변경 없음
171	여수시 묘도동	1538-4	도로	21	21	-	여수시 묘도동 1333-1	윤상심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38-4	도로	21	-	2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72	여수시 묘도동	1979-11	도로	70	20	20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없음
173	여수시 묘도동	1538-3	도로	23	9	9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174	여수시 묘도동	1538-2	전	3	3	3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175	여수시 묘도동	1562-18	대지	501	1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1길 16(묘도동)	정종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21	대지	1	-	1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76	여수시 묘도동	1562-5	도로	17	17	-	여수시 묘도동 1340	한이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5	도로	17	-	17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77	여수시 묘도동	1562-8	도로	266	266	266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78	여수시 묘도동	1562-11	도로	63	63	-	여수시 묘도동 1095	한이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11	도로	63	-	63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79	여수시 묘도동	1562-19	도로	80	28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40(묘도동)	정종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22	도로	28	-	28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80	여수시 묘도동	1562-4	도로	16	16	-	여수시 묘도동 1340	한이현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4	도로	16	-	16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81	여수시 묘도동	1562	주유 소	1,199	12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40(묘도동)	정종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20	주유 소	1,199	-	12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82	여수시 묘도동	1562-17	도로	15	15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40(묘도동)	정종두			기정
	여수시 묘도동	1562-17	도로	15	-	15	국토교통부	국유지			변경
183	여수시 묘도동	1562-13	전	44	11	11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184	여수시 묘도동	1562-14	도로	1	1	1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185	여수시 묘도동	1562-15	도로	17	8	8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86	여수시 묘도동	1562-16	도로	4	4	4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187	여수시 묘도동	1561-12	도로	20	1	1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88	여수시 묘도동	1561-11	전	452	3	3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89	여수시 묘도동	1561-4	도로	53	5	5	여수시	국유지			변경 없음
190	여수시 묘도동	1561-3	도로	46	2	2	해양수산부	국유지			변경 없음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19-66 (2026. 8. 27.)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13-10번지 지선 공유수면	1,072.5㎡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37	백초어촌계 외 1(하봉군)	어선 접안 및 해양레저시설 (마리나 선박접안)	'21. 7. 10. ~ '26. 7. 9.	'26. 7. 10. ~ '31. 7. 9.

2026. 8. 27.

여 수 시 장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규 모 : L=175m, B=7m (2,196m²)
- 사 업 기 간 : 2026. 3. 26. ~ 2027. 12. 31.

2. 열람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1.(15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3)로 문의바랍니다.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격시점: 2026. . .								작성자: 공무원 장명순 (인)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6필지	11,530		2,196								
1	화정면 제도리	73-5	3,050	73-20	685	도	도		국 (국토교통부)				
2	화정면 제도리	73-4	3,482	73-18	822	임	임		국 (신림청)				
3	화정면 제도리	73-2	2,390	73-16	12	임	임	여수시 상암로 16,***동***호(둔덕동, 라온유아파트)	배*찬				
4	화정면 제도리	73-2	2,390	73-17	6	임	임	여수시 상암로 16,***동***호(둔덕동, 라온유아파트)	배*찬				
5	화정면 제도리	73-1	2,126	73-14	335	임	임	여수시 화정면 제도1길**	임*현				
6	화정면 제도리	76	482	76-2	336	전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21길37-1,***호(신사동, 청우케이시)	배*찬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격시점: 2026. . .							작성자: 공무원 장명순 (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화정면 제도리	73-14	감나무		1	주	여수시 화정면 제도1길**	임*현				
			후박나무		1	주						
			편백나무		10	주						
			잰피나무		1	주						
			오동나무		8	주						
			두릅나무		1	주						
			철쭉		30	주						
2	화정면 제도리	73-14	바닥포장	콘크리트(3.2*23)	73.6	m²	여수시 화정면 제도해안길**	임*현				

의견서

1. 사 업 명	화정면 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3. 의견제출자	주 소	(전화)		
	성 명		생년월일	
4. 내용				

2026년 2025년 2024년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6-2641호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1

2

신규채용 등록

가. 등록일시 : 2026. 8. 31.(월) 18:00 까지

나. 등 록 처 :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시설팀(국동임시별관 2층)

다. 제출서류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3

등록 시 유의사항

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관광과(관광시설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533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하반기 평화테마촌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일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수리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발전소 위치	용량(kW) (개시용량)	비고
1	양도인	송효숙	여수 2024-199	해든4호 태양광발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묘도동 855-1, 855-2	176.4 (176.08)	
	양수인	이실근		실근1호 태양광발전소			

끝.

[여수시 공고 제2026-26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전남대 여수캠퍼스 생활관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전남경상보금자리 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성일디엔씨(주)

라. 감 리 자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둔덕동 산96-1번지 외 39필지

2) 대지면적 : 399,217㎡

3) 연 면 적 : 9,810.63㎡

4) 층 / 동 : 지상8층/1동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기숙사)

6) 공사기간 : 2026. 8. 21. ~ 2028. 1. 31.

7) 순공사비 : 21,203,6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8,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5. 9. 25.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향타·향받기(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2회)
- 지하 10M 이상 굴착 (2회)
- 높이 5M 이상 동바리 (2회)
- 높이 31M 이상 외부 비계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311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8. 26.(수) 10:00 ~ 9. 3.(목)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6. 9. 8.(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9. 8.(화) ~ 9. 10.(목)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9. 11.(금)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 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 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도 쌍봉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여수시립쌍봉도서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 ☐ 공고기간 : 2026. 8. 27.(목) ~ 9. 6.(일) [11일간]
- ☐ 접수기간 : 2026. 9. 3.(목) ~ 9. 6.(일) [4일간]
- ☐ 모집인원 : 2명 (2개 강좌)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oranararo@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 서명 란에 서명 후 스캔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분야 : 2개 강좌

구 분	강좌명	횟수	운영기간	대상	인원	비고
계	2개 강좌	24			2명	
쌍 봉 도서관	그림책 감성코칭 지도사 자격증	12	9. 21. ~ 12. 14. 매주 월/10:00-12:00	성인	1	수강료 재료비 별 도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	12	9. 21. ~ 12. 14. 매주 월/13:00-16:00		1	

※ 수강생 모집정원이 50% 미만인 경우는 폐강될 수 있으며, 운영기간 및 요일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①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자
 -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 공인자격증 또는 지도사범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관련분야 2년 이상 전공을 하였거나 관련 분야 협회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② 해당분야 교육 및 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강좌신청서 1부 [붙임1]
- ② 강사이력서 1부 [붙임2]
- ③ 강의계획서 1부 [붙임3]
-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붙임4]
-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5]
- ⑥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⑦ 봉사활동증명서 1부(관련 경력 봉사활동, 해당자에 한함)

☐ 강사수당 : 기본(1시간) 80,000원/ 초과(1시간당) 40,000원

☐ 선정기준 : 평가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선정

※ 「시립도서관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강사 위촉 기준」에 의거

☐ 합격자 발표 : 2026. 9. 9.(수)/ 개별 유선 통보

☐ 기타사항

- ①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②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이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선정(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④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선발된 강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강좌 폐강 시 강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도서관(☎659-4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좌신청서 (강좌명 :)			
인적사항	성명		
	주소	도로명주소로 작성	
주요경력			
자 격 증			
현 근무처 및 활동단체		연락처	HP : E-mail :
여수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026년도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로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도서관운영과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사이력서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봉사활동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붙임 2]

강 사 이 력 서

1. 일반사항

성명(한글)		접수번호	2026 - -
생년월일			
현주소지			
전화번호(자택)		핸 드 폰	
E-mail		계좌번호	

2. 학력사항

학교명	기간	전공	학위	상태
				(졸업, 수료, 중퇴)

3. 강의경력(해당 강의와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기록하여 증빙 서류 첨부)

교육기관명	강 좌 명	강의대상	활동기간	강 좌 내 용

4. 자격사항(해당 강의와 관련된 자격증만 기록하여 사본 첨부)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발급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강 의 계 획 서

☐ 강좌명 :

☐ 강사명 : (서명)

강의목표	
지도방침	
강의개요	

횟 수	월 일	강의 주제	내 용	비 고
교재비 및 재료비				

※ 신청 강좌별 회기에 따른 강의 계획 작성(날짜는 첫 기수 운영에 맞춰 작성)

※ 준비물, 교재비, 재료비 산출내역 첨부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강사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6. . .

성 명

(서 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여수시(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

여 수 시 장

I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최장 36개월) 지원

II 모집 인원 : 75가구(예정)

○ 시·군별 선정인원

목포시	38	여수시	75	순천시	142	나주시	50	광양시	80
담양군	3	곡성군	3	구례군	1	고흥군	3	보성군	2
화순군	15	장흥군	3	강진군	5	해남군	8	영암군	3
무안군	50	함평군	1	영광군	9	장성군	3	완도군	2
진도군	3	신안군	1	☞ 시·군별 선정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II

신청대상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기존 전남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으로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사업의 무주택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③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공사	주택도시 기금	은행
상품종류	u-보증 자리론	아낌e 보증자리론	t-보증 자리론	디딤돌		
심사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 기관	일반금융기관		

※ 디딤돌 대출은 기지원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상품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만 인정

※ '23~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5. 10. 1. ~ 2026.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2. 제외대상

-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차지원 대상자 등

3.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 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9. 1.(화) ~ 10. 16.(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시·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동의, 서명할 것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 거주지 외 시·군, 타시도 등)'로 모두 발급 요청
-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 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상품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⑬ 위임장 1부. 【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V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지원금 지급
'26. 9. 1.(화) ~ 10. 16.(금)	10월 중	11월 중	연 1회 지급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별 소득순 선정
- 통보방법 :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3.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연1회 지급(12월)
- 지원금액 :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에 직접 방문(본인, 대리인)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 ⑦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2026년 신규 선정자는 1.신청서, 8.통장사본만 추가 제출(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군에서 명시한 기한 내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시·군에서는 미지급 관련 증빙자료 보관)

VI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인적 사항	신 청 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 현 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대출 현황	대출심사 신 청 일	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 품 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주택 매입 현황	구입일자	. . . (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 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주택 주소					
가족 구성원 현 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0			
	배우자					
	자녀					
	〃					
	〃					

○ 신청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①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했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 상품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만 인정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차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으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읍·면·동 등
2.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서식 3】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 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 자포 함)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 재 학여부 (학교명/학 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보장 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 · 입소 ☐ 타법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신혼부부 ·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위임장

위임하는 사 랑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랑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납부자	☐ 본인 ☐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년 ()월 ~ ()년 ()월
총납부금액	금 원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H.P.)
	000000-0	

■ 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22개 시·군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한 경우
-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 ⑥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유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6 - 2655호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10.

2. 인 원 : 9명

3. 임 기 : 2026. 9. 20. ~ 2028. 9. 19.까지

※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4. 기 능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위원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신상호	동서대학교	교수	
2	박주용	박주용법률사무소	변호사	
3	문정	문정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4	조연준	건축사사무소 창조	건축사	
5	김현일	건축사사무소 가원	건축사	
6	김현진	김현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	
7	염상운	경남2차아파트	주택관리사	
8	김종곤	오림부영3차아파트	주택관리사	
9	김문환	여수시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위원장)

6. 문의사항 : 여수시 건축과(☎061-659-4099)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른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8월 25일

여 수 인 시 장

1. (의견 제출대상) ※ 허가 과정 에서 사용면적 등 일부 신청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수량,ton)
	개도저수지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42		100톤/일
	관정 (94-2-6-42)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04		100톤/일
사 용 내 용 (사용 사유)		가뭄(재난) 발생시 상수원수 사용			
사 용 방 법		저수지간 이송 사용			
사 용 기 간		2026. 10. 2. ~ 2029. 10. 1.		사용개시예정일	2026. 10. 2.

2. (의견 제출내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

3.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 8. 25. ~ 2026. 9. 8. (14일간)
- 장 소 : 여수시청 건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
- 열 램 방 법 : 여수시 건설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4. (의견 제출서류)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 출 방 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
여수시청 건설과 (☎061-659-4052)

6. 유의사항

가. 의견 제출내용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1) 관계주민(사용허가 대상 수해농업인 및 해당 시설 소재 시·군·구 주민)이 아닌 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 2) 의견서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 3) 의견 제출기간을 지나서 의견서 또는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관 계 주 민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 건 제 출 대 상	전남 여수시 화양면 개도리 일원에 위치한 개도저수지 및 관정 (94-2-6-42)	
의 건 제 출 내 용	상기 공고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로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는 사항	

[의견 제출 내용]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무관한 경우,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공기관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 제공항목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제공목적 : 법률에 따른 국회, 감사원, 정부 등 사용허가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감사자료 요구 시
- 제공 및 이용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 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청문실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8. 25. ~ 10. 1.
4.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대상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대상

연 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주소	성명
1	2024-허가과- 신축허가-76	2024-06-28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200-21 외2필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9	주식회사 어반블루윙스
2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113	2022-06-09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산 10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구룡길 79	양수정
3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118	2022-06-13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83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주)제이제이 코리아
4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156	2022-07-29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73-1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산단로 46	유한회사 에프아이엠
5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166	2022-08-08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839-6 외1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52	(주)드림찬전기
6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188	2022-09-07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산 129-5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95	위웍스주식회사

7	2023-허가과- 신축허가-99	2023-10-05	전라남도 여수시 호명동 911-1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99	이필용
8	2023-허가과-신축허 가-108	2023-10-25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5-7 외1필지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2길 17	주식회사 호텔블루망고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허가 취소처분 대상

연 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주소	성명
1	2011-건축과- 신축허가-128	2011-04-08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413 외1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오천8길 15	이평식
2	2011-건축과- 신축허가-212	2011-06-07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상봉리 745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장수길 6	배금표
3	2012-건축과- 신축허가-1	2012-01-02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1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김금숙
4	2012-건축과- 신축허가-416	2012-11-23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산 127 외1필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주식회사 일신이앤디
5	2014-건축과- 신축허가-254	2014-10-0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595-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이상촌길 60	김백수
6	2015-허가민원과- 신축허가-334	2015-12-2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3-1 외3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54-26	이경태
7	2016-허가민원과- 신축허가-186	2016-05-2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4-3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54-26	이창훈, 이상철, 이경태, 이형민, 이선호
8	2016-허가민원과- 신축허가-410	2016-10-2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51-10	이찬영
9	2016-허가민원과- 신축허가-415	2016-11-09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73-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561-6	주성혜
10	2017-허가민원과- 신축허가-31	2017-01-1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238 외2필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3	주식회사자베 이관광리조트
11	2017-허가민원과- 신축허가-388	2017-11-01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55-1 외4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00	추현호, 김학수, 류상선
12	2017-허가민원과- 신축허가-388	2017-11-01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55-1 외4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산1길 60	추현호, 김학수, 류상선
13	2017-허가민원과- 신축허가-412	2017-11-29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50-2 외5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북3길 23	주식회사 뉴동아
14	2018-허가민원과- 신축허가-197	2018-05-3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남8로 23	김은아
15	2018-허가민원과- 신축허가-205	2018-06-05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452 외1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대1길 36-12	(주)금강주택
16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46	2018-07-03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81 외3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자실로 30	주식회사 리얼밸류
17	2018-허가민원과- 신축허가-315	2018-07-1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5-3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문2로 69	주식회사 남원개발
18	2018-허가민원과- 신축허가-431	2018-11-07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31 외6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산2길 78	김범희
19	2018-허가민원과-	2018-12-2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식회사

	신축허가-466		죽포리 54-6 외2필지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142	마레키아레
20	2019-허가민원과- 신축허가-104	2019-04-02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23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주식회사 스톤브릿지 코퍼레이션
21	2019-허가민원과- 신축허가-183	2019-06-1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 3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독립로367번길 6	주식회사 상그릴라
22	2019-허가민원과- 신축허가-200	2019-07-01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568-7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2	주식회사지씨 티에코에너지
23	2019-허가민원과- 신축허가-411	2019-11-14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 7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청동3길 28	유한회사 드림노인전문 요양원
24	2020-허가민원과- 신축허가-9	2020-01-09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00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팔마1길 25	김선준2
25	2020-허가민원과- 신축허가-40 2017-허가민원과- 신축허가-45	2020-02-05 2017-02-0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16-19 외1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송문호
26	2020-허가민원과- 신축허가-174	2020-05-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92-37 외2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박람회길 56	이현희
27	2020-허가민원과- 신축허가-336	2020-09-2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4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구암3길 22	김진호
28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17	2021-01-28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18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남1길 34-5	정형균
29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80	2021-03-0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19-20 외4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73-21	해산건설 주식회사
30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83	2021-03-09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산 51-12 외6필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73	오정연
31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150	2021-04-22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94-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남8로 23	이명숙
32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286	2021-07-0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 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둔덕8길 17	양들의그리스 도의교회
33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296	2021-07-06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34	2022-허가민원과- 신축허가-32	2022-02-22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5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대경도2길 12-4	백진용
35	2021-허가민원과- 신축허가-386	2021-10-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19-21 외 8필지	여수시 웅천남1로 8, 101동 3504호	김 영
36	2024-허가과- 신축허가-51	2024-05-16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317-8	여수시 신월2길 11, 102동 502호	구상은

6.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와 관련된 당사자는 본 공고문을 확인 후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불임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일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61-659-4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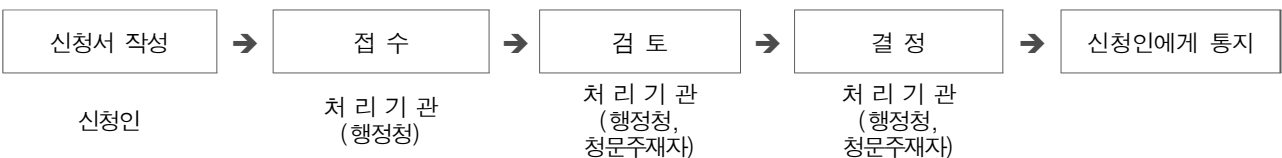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여수시 공고 제2026-2667호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여수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등) 및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명단 공개)에 따라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2026. 8. 27.

여 수 시 장

□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변경) 공개

가. 위 원 수 : 총 30명

나. 임 기 : 2024. 10. 18. ~ 2026. 10. 17.(2년)

다. 변 경 사 유 : 제9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상임위원 변경(지역대표 1)

라. 위 원 명 단

연번	분 야	소 속	직 위(전문분야)	성 명	위원구분	비고
1	지 자 체 < 4 >	여 수 시	부 시 장	정현구	정부위원	위 원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 상 풍 력 산 업 과 장	박숙희		당 연 직
3		여 수 시	신 산 업 에 너 지 과 장	최다운		당 연 직
4		여 수 시	해 양 정 책 과 장	홍주성		당 연 직
5	지 역 대 표 < 2 >	여 수 시 의 회	시 의 원	김철민	민간위원	의 회 추 천
6		여 수 시 의 회	시 의 원	송하진		
7	주 민 대 표 < 7 >	화 정 면	화 정 면	이강채		
8		남 면	금 오 도	강기천		
9		남 면	연 도 , 안 도	김대준		
10		삼 산 면	거 문 도	이강배		
11		삼 산 면	초 도 (대 동 리)	변영복		
12		삼 산 면	초 도 (의 성 리)	김용수		
13		삼 산 면	손 죽 도	김영진		

14	어업인 대표 < 10 >	여수수협	수협대표	김상문	민간위원	
15		거문도수협	수협대표	김효열		
16		나로도수협	수협대표	김맹환		
17		멸치권현망수협	수협대표	주승호		
18		대형선망수협	수협대표	한창은		
19		근해유망수협	수협대표	명영재		
20		전남정치망수협	수협대표	최길선		
21		제3구,4구잠수기수협	수협대표	하재규		
22		여수연안통합어업인협의회	어민대표	여인남		
23		거문도선주회영어조합	어민대표	최용만		
24	발전사	발전사협의체대표	문도풍력	최상린		의결권없음
25	공익위원 < 6 >	정선부위원	해양지역전문가(남면)	김근평	공익위원	
26			해양지역전문가(화정면)	배중원		
27			해양지역전문가(삼산면)	최종순		
28		민선간위원	해양수산전문가	한경호		
29			해양환경전문가	임재균		
30			해상풍력전문가	손충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61-659-2140)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본부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제5항제6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납부기한
홍*우	경상북도 경산시 상암로 12길 ***-**, 1**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900,000원	2026. 8. 31.
최*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대경도*길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	900,000원	2026. 8. 31.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

4. 기 타

-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제1항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불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12/1,000의 증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사용기간	목적	면적	
				변경전	변경후
여수요트 (정광옥)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18-15번지 지선	'24. 4. 16. ~ '29. 4. 15.	마리나 선박임대업 및 수상레저 사업을 위한 부잔교, 푼톤 등 설치	2,648㎡	572㎡

※ 교대확장(휴게시설), 구멍조끼 시설 추가, 부잔교 배치 변경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8. 26. ~ 2026. 9. 9.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6. ~ 2026. 9. 9.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백야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41-4번지 지선	부잔교 및 도교 설치	1,011.56㎡	허가일로부터 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8. 26. ~ 2026. 9. 9.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8. 26. ~ 2026. 9. 9.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일부 위원의 보궐 위촉(2명) 사항을 반영한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1. 공고기간 : 2026. 8. 27. ~ 9. 11.(15일간)
2. 위원명단 : 붙임 참조
3. 위원역할 : 다음사항 심의·의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겸임)
 - 가.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목의 변경, 경계복원측량 및 공부정리 허용 여부
 -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나.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붙임]

1.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개 요

-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인원 : 위원장(시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회 역할
 - 사업지구 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 조정금의 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 업	위원임기 (2년)	위촉사유	비 고
1	위원장	서 영 학	공 무 원 (시장)	재직기간	당연직	
2	부위원장	박 형 열	공 무 원 (행정안전국장)	"	당연직	
3	위 원	김 동 호	공 무 원 (민원지적과장)	"	당연직	
4	위 원	김 희 영	공 무 원 (건축과장)	"	당연직	
5	위 원		사업지구 읍·면·동장	"	당연직	
6	위 원	박 주 용	변 호 사	2025. 12. 1. ~ 2027. 11. 30.	위촉직	
7	위 원	박 배 연	변 호 사	"	위촉직	
8	위 원	김 문 곤	지적업무경력자	"	위촉직	
9	위 원	정 신 출	시 의 원	2026. 8. 26. ~ 2027. 11. 30.	위촉직	여수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로 인한 보궐 위촉
10	위 원	최 윤 모	지적업무경력자 (前)지적직 공무원	"	위촉직	기존위원 사임으로 보궐 위촉

2.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

□ 개 요

-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인원 : 위원장(부장판사) 포함 11명 이내
- 위원회 역할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 업	위원임기 (2년)	위촉사유	비 고
1	위원장	이 태 우	공무원 (순천지원판사)	재직기간	당연직	
2	부위원장	박 형 열	공 무 원 (행정안전국장)	"	당연직	
3	위 원	김 동 호	공 무 원 (민원지적과장)	"	당연직	
4	위 원	김 희 영	공 무 원 (건축과장)	"	당연직	
5	위 원		사업지구 읍·면·동장	"	당연직	
6	위 원		사업 지구 토지소유자	사업기간	당연직	
7	위 원	박 주 용	변 호 사	2025. 12. 1. ~ 2027. 11. 30.	위촉직	
8	위 원	박 배 연	변 호 사	"	위촉직	
9	위 원	김 문 곤	지적업무경력자	"	위촉직	
10	위 원	정 신 출	시 의 원	2026. 8. 26. ~ 2027. 11. 30.	위촉직	여수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로 인한 보궐 위촉
11	위 원	최 윤 모	지적업무경력자 (前)지적직 공무원	"	위촉직	기존위원 사임으로 보궐 위촉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6-2678호

우리 시 하천 구역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72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7. ~ 9. 3.(7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7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공시송달 대상 : 불임 참고

6. 고지사항

가. 상기 불법 점용물에 대해 2026년 9월 3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 건설과 하천팀 (☎061-659-4038)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임시청사 건설과)

다. 팩스번호 : 061-659-5834

라.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예정

제2026-2678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589-5번지	가설건축물	2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쌍봉천(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589-5번지
가설건축물 2개소

제2026-2678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253번지	물건적치(폐자재)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쌍봉천(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253번지
물건적치(폐자재) 1개소

제2026-2678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42-2번지	물건적치(폐자재)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쌍봉천(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산동 642-2번지
물건적치(폐자재) 1개소

제2026-2678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3-24번지	불법경작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쌍봉천(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13-24번지
불법경작 1개소

제2026-2678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 명 : 미 상

주 소 : 미 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3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360-9번지 (서촌리 1431-2번지 일원)	물건적치(폐자재)	4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화양천(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1360-9번지
(1431-2번지 일원)

물건적치(폐자재) 4개소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6-2679호

우리 시 소하천 구역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소하천 구역 내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3차)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7. ~ 9. 3.(7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 공시송달 대상 : 불임 참고

6. 고지사항

가. 상기 불법 점용물에 대해 2026년 9월 3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 건설과 하천팀 (☎061-659-4038)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나.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임시청사 건설과)

다. 팩스번호 : 061-659-5834

라. 제출기한 : 2026. 9. 2.(수)까지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예정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31번지(150-5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사장천(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두모리 1631번지
(150-5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1871-1번지(1870-1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연화지천(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1871-1번지(1870-1)

가설교량 1개소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88-9번지(1629-18번지 일원)	물건적치	2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우산천(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88-9번지(1629-18)

물건적치 2개소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911번지(711번지 일원)	복개구조물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작금3천(0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911번지
(711번지 일원)

복개구조물 1개소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 (341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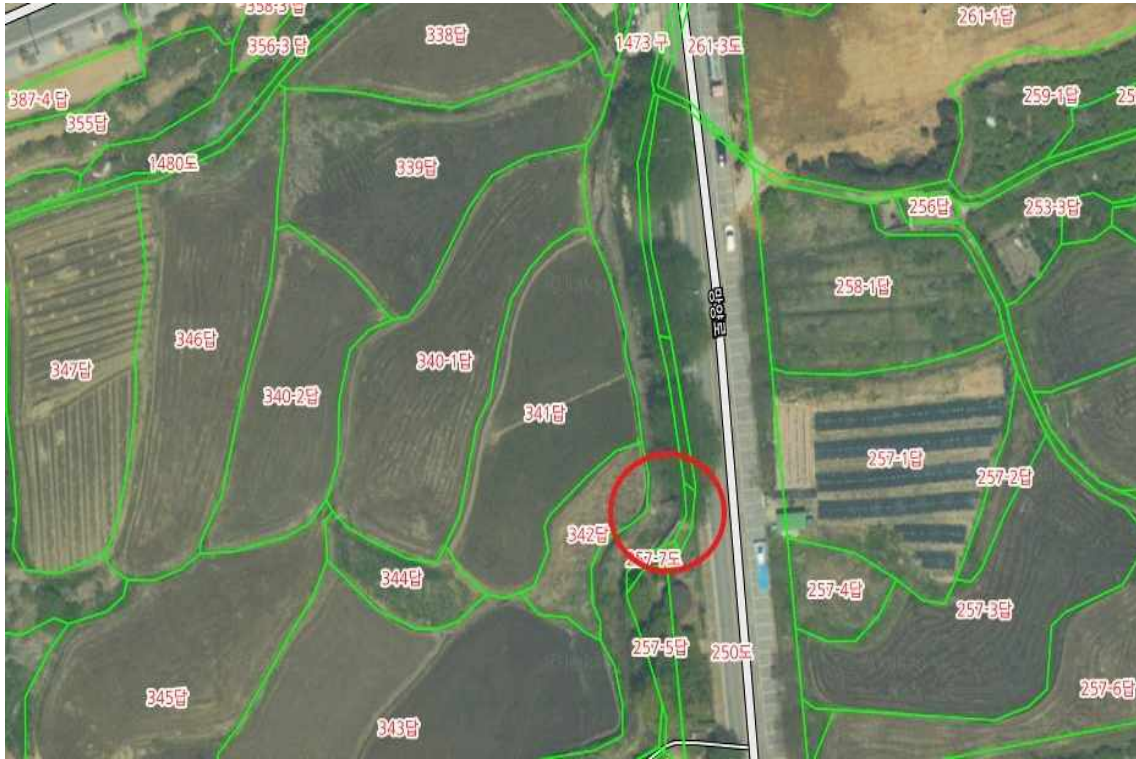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절골천(0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만흥동 1473번지(341번지 일원)

가설교량 1개소

제2026-267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8월 11일 여수시 공고 제2026-2494호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 2026년 8월 25일(화)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일(목)까지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리면 소리면 사곡리 산32-2번지	가설교량	1개소	원상복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8월 27일

여 수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하사천(0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산32-2번지

가설교량 1개소

여수시 공고 제2026 - 2682호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자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8. 26. ~ 9. 11. (16일간)

2. 모집인원 : 9명(위촉직 위원)

3. 자격 및 선정기준

- 경관·건축·시각·미디어 등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등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여수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우선 선정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일 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4. 위원회 임무(아래 사항 심의)

-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5.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신청자 미달될 경우 자체 선정)

6.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년 9월 중(개별 통보 및 공고)

7. 제출서류

-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관련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8.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659-5849), 전자우편(dothome1@korea.kr)

- 접수장소(우편 보내실 곳)
(우)596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웅천11길 7, 도시재생과

9. 기타 참고사항

- 위원의 임기는 2년(2026. 9. 21. ~ 2028. 9. 20.)입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는 위원의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시 공무원, 여수시의회의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과(☎061-659-454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2026-
성명	한글 : 한자 :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만세)		연락처	
주소	(도로명 주소)			
직업 (구체적으로 기재)			직장소재지	
			직종	
여수시 거주기간	. . ~ . . (년 개월)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위원회명	직위	기간	비고
			. . ~ . .	
기타 특기사항				
첨부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학위 및 전문분야 또는 주요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도로명주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2026년 화정면 해수욕장 수상안전 계도요원 기간제근로자 서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화정면 해수욕장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서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화 정 면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1명

○ 응시번호 : 1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6. 8. 27.(목) 09:30

○ 장 소 : 화정면사무소 회의실(2층)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09:0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함.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8. 28.(금)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별 통보된 시간 1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정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1238)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 쌍봉동 농지 전수조사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쌍 봉 동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27.(목) ~ 2026. 9. 3.(목) /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8. 31.(월) ~ 2026. 9. 3.(목) 18:00 까지

다.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흥국로 25, 쌍봉동 주민센터(행정민원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전화 : 쌍봉동 주민센터(☎061-659-1596)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쌍봉동주민센터	1명	2026. 10. 12.(월) ~ 11. 11.(수) (1개월)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 추진일정 및 예산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보수	기타
일 90,720원 (생활임금 일 8,160원 포함) 및 그 밖의 법정 수당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 2026년 쌍봉동 농지 전수조사(심층조사 대상 필지 현장 조사) - 현장 조사(사진 촬영 및 농지 현황 파악)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 농지 전수조사 업무의 이해 - 현장 확인을 위해 운전능력이 능숙한 자 - 태블릿PC 등 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농지 전수조사 업무보조	
	자격	○ (공통자격)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접수일까지 본인의 주민 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장 확인을 위해 운전이 가능한 자(운전면허 등) ○ 지도 어플을 이용하여 농지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농지 관련 업무 경력(3개월 이상) (5점) ○ 운전면허증 보유자(1종 보통 및 2종 보통) (5점)	

4

채용분야 가산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분야별 우대요건, 자격증 소지자	직무기술서에 따름	
장애인	해당없음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 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내용	4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4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2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중 3개가 명확히 드러남	4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②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	0점	5점	10점		
내용	2개 평가 지표 중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음	2개 평가 지표 중 1개가 명확히 드러남	2개 평가 지표 모두 명확히 드러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4.(금) / 여수시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보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6. 9. 8.(화) 예정 / 쌍봉동주민센터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 항목)	점 수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현장 업무 수행 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0.(목) 예정 (여수시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채용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채용

* 결격사유 또는 신원조회 결과 범죄사실 확인되는 경우 등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바.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찬인척 관계 해당 사항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사. 자격증명서 1부.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아. 경력증명서 1부.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양식은 우리 시 누리집(www.yeosu.go.kr) 에서 내려받아 작성이 가능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 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해당 응시 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 061-659-1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	--	------	----------	--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3. 차량 업무 가능 여부 *업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만 작성		
차량 종류	차량 번호	업무가능 여부
		☐ 근무지 이동 ☐ 현장 출장

4.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 경험 ☐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쌍봉동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2쪽)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칸을 별도로 늘려 활용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3쪽)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4쪽)

○ 주요내용1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담당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추진전략(계획)의 충실성과 적실성을 평가하므로 내실 있게 작성 바랍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내용부실,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활용 가능

1.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계획

2. 응시분야 직무수행 추진전략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주시
이용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직자 이해관계 확인 포함)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6. . .

성 명

(서 명)

쌍봉동장 귀하

【붙임 6】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쌍 봉 동 장 귀하

【붙임 6-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 부모 ○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2026년 대교동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 공고

2026년도 대교동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대 교 동 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 합격자 : 1명(응시번호 2)

2 신규채용 등록

- 등록일시 : 2026. 8. 28.(금) 10:00
- 등 록 처 : 여수시 대교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개별통보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지참

3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 14일 후,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됨.
- 최종합격자는 근무부서 및 근무기간 개별 유선 통보 이후 근무자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무부서 및 교육 관련 사항은 대교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1-659-14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교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1417)

입 법 예 고 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8. 26.

여 수 시 장

1. 자치법규명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민선9기 공약사항인 「시민옴부즈만 운영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정 명칭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 제명 변경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원회 운영체계 변경

- 상근위원 중심의 독립제 → 상근·비상근 혼합형 위원회

- 임기 변경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 3년, 한 차례 연임

- 추천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 15명 이내 → 7명 이내

나.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용어 및 서식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6. ~ 9. 14.(20일간)

5. 개정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시민소통담당관)
- 전 화 : 061-659-3076
- 팩 스 : 061-659-5805
- 이 메 일 : nayaksj@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1)

☐ 조례명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2)

☐ 시행규칙명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제3조(설치) 여수시에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근무형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최초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⑦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0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고충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한다.

1.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여수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 여수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

제13조(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항에 따른 추천이 완료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2.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교수 등 학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제15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 기관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조사 및 이송·각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의견표명의 방식 및 처리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고충민원의 신청·조사·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무기구 구성 및 운영

제20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 사용할 별도의 공인을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둘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종전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구에 중복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
·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

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고충민원 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8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위원회가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해당 조사를 담당한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기구의 직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위원이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송·종결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0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 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활동을 위하여 상근하는 위원에게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한다. 다만,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비상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의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 직무수행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 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 이유		
*피신청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기타 참고사항		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신청서는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피신청인’ 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 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자격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청구일로부터 조사 종료일 및 조사 관련 문서 보존 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요청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위임·의뢰기관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기관 (부서)명			
	주소			
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				
기타 참고사항		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있음 ☐ 없음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위임·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단체, 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illegible]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신청인				
피신청인				
접수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고충민원신청서 보완 요구서	
접수번호	
신 청 인	
귀하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제 목	
보완제출 기간	
보완내용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지연) 통지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지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제 목		
내 용		
연장(지연) 이 유	연장일자	

고충민원조사 통보 및 요구서	
접수번호	
신 청 인	
귀하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제 목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내용 설명.자료. 출석.의견 진술 등 요구사항	
소관부서	

(앞 쪽)

시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위 원

사 진

3cm ×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여 수 시

60mm × 90mm(PVC(비닐) 980.4g/m²)

(뒤 쪽)

제 호

신 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

◎ 여수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한 경우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은 물론 주민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사실관계

4. 검토 및 판단

5. 결론

고충민원처리 의견표명서(시정권고·제도개선)	
접수번호	
신 청 인	
수 신 : 시장 또는 ○○기관장 귀하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시정권고·제도개선)하오니,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및 조사결과	
시정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목적 및 내용	
소관부서	

고충민원 (처리.각하.이송.종결) 통지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수 신 : 귀하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각하.이송.종결)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조치내용, 처리·각하· 이송·종결 사유)	